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5년 10월 19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의안번호 : 제 2015-46 호
- 나. 제 안 자 : 강서구청장
- 다. 제안일자 : 2015년 10월 6일
- 라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7일
- 마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19일 제2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심사

2. 제안이유

- 본 기금의 설치근거 법령인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기금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자활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라 “자활공동체”를 “자활기업”으로 변경
- 나. 자활기금 재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금 삭제 (안 제2조 제6호)

- 다.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과 자활사업실시기관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 가능토록 기금용도를 신설하고,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사회적 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 삭제 (안 제3조 제4호, 제5호, 제12호, 제13호)
- 라. 기금일몰제를 적용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- 마.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- 바.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임대보증금 시설 및 기관 당 7천만원 까지 확대하고, 상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연5%로 변경(안 제10조 제3항, 제5항)
- 사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,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있음 (붙임 비용추계서 참조)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15. 8. 19. ~ 2015. 9. 8.) 결과 : 의견 없음
 - 2) 규제 사전심사 : 해당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(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설치 근거 법령인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개정내용과 기금운용상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,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라 “자활공동체”를 “자활기업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,
 - 안 제2조에서 기금재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금이 2011년 이후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어 기금조성의 항목에서 삭제하였으며,
 - 안 제3조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과 자활사업실시기관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 가능토록 기금용도를 신설하고,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과 사회적 기업 육성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됨으로 내용을 삭제하였고,
 - 안 제4조의 2에서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일몰제를 적용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,
 - 안 제5조의 2에서는 기금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,

- 또한 안 제10조에서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을 기관 당 3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로 현실화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연체이자율을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적용에서 연 5%의 연체이자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.
- 따라서,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설치의 근거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지원의 확대 및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나, 안 제10조 제3항 임대보증금 증액지원 금액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연체이자 적용율 등 개정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 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(자활기금의 적립)

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
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(補填)

2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
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
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
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

6.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
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
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

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
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
10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게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